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대규모 방산 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응구매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조건부 거래로, 수입국과의 약정 이행을 위해 특정 공급자와의 수의계약이 필수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법령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응구매 추진시 수의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대응구매 추진 여부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명시하여, 방산 수출과 연계된 전략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의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1.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2. 수의계약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식

제2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u><신 설></u>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 <u>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의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u> <u>1.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u> <u>2. 수의계약</u> <u>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 는 방식</u>
<u>① ~ ⑥ (생 략)</u> <u><신 설></u>	<u>② ~ ⑦ (현행과 같음)</u> ⑧ <u>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9조 에 따른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13